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11. 28(화) 10:00

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18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11. 15.
- 라. 회부일자 : 2023. 11. 15.

2. 제안이유

주민고용보조금 대상자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주민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민고용보조금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중장년층” 단어 삭제(현행 제2조제2호 삭제, 안 제5조제2호)
- 나. 주민등록상 나이가 “36세 이상의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미취업 자”에서 “15세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안 제5조)
- 다. 대상 기업의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중소기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으로 변경(안 제6조제2호)
- 라. 금천구 취업정보센터를 금천구 일자리센터로 변경(안 제9조제1항제1호)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호,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제2항, 제10조)

4.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주민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는 주민고용보조금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중장년층’ 삭제하고
 - 안 제5조에서는 주민등록상 나이가 ‘36세 이상의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미취업 자’에서 ‘15세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함.
 - 안 제6조에서는 대상 기업의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중소기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으로 변경함.
- 본 개정안은 주민고용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